

산학협력단보수규정

제정 2021. 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 직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봉제”란 보수를 연단위의 일정금액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원 기본연봉표상에서 연차연봉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복리후생증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4조(연봉, 직급) ① 산학협력단의 모든 직원은 연봉계약제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 받는다.

② 직원의 연봉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③ 직원의 승진 및 승급에 의한 직급은 계약한 연봉과는 관계없이 산학협력단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연봉체계) 직원의 연봉은 기본급, 주식보조비, 명절수당 및 법정수당, 기타 임의수당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6조(연봉책정) ① 직원의 신규 임용시 개인별 희망연봉을 기초로 대상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열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② 직원의 연봉은 직원 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학협력단의 실정 및 제반여건, 직무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다만,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임용 및 징계로 인한 강임의 경우에는 그 임용일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③ 퇴직 또는 휴직한 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초임금은 퇴직 또는 휴직 당시의 연봉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7조(보수의 지급) 직원의 보수는 명절수당을 제외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수의 감액)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가,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할 경우에는 결근 일을 제하고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해직된 직원이 잔무처리를 위한 집무를 계속할 때는 15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을지학원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학교법인 을지학원 정관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휴가기간의 보수)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 휴가는 보수계산일수에 산입한다. 단 무급휴가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망시의 보수) 직무상(공무상) 사망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다.

제14조(보직수당) 보직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정한다.

제15조(명예퇴직수당)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은 학교법인 을지학원 정관 제4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특수근무수당) ① 산학협력단장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직종 또는 직무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수근무수당의 금액과 지급방법은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기타수당)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외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의 곤란성 또는 책임도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수당은 월정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한다.

제18조(퇴직금) 산학협력단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정함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학칙 및 제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특정사업 계약직과 연구원의 보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보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직원평가 지침

- ① 직원평가규정 결과 활용 : 대학직원평가규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대상자 중에서 평가일 기준 1년 이상자에 대해 연봉책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봉 인상시 평가 등급에 따라 인상율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다.